

의안번호	2209101
의 퇴 인	정점식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5.
추계번호	25E149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후계·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조합 출자 배당소득세율
및 예탁 이자소득세율 인하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후계·청년 농어업인의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및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16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145억원(연평균 29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후계·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세율 인하 (안 제88조의5)	-7	-13	-13	-13	-13	-60	-12
후계·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율 인하 (안 제89조의3)	-10	-19	-19	-19	-19	-86	-17
합계	-16	-32	-32	-32	-32	-145	-29

주: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,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88조의5 (조합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 후계·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세율 인하 -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 후, 2026년 5%, 2027년 이후 9% 등 저율과세 - (개정안)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 후, 2026년 5%, 2027년 이후 9% 등 저율과세 (다만, 후계·청년 농어업인의 경우 2026년 3%, 2027년 이후 5% 등 저율과세)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2	안 제89조의3 (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 후계·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율 인하 －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후, 2026년 5%, 2027년 이후 9% 등 저율과세 － (개정안)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후, 2026년 5%, 2027년 이후 9% 등 저율과세(다만, 후계·청년 농어업인의 경우 2026년 3%, 2027년 이후 5% 등 저율과세)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	－
2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	－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-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세수효과 추계
 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2026년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후계·청년 농어업인의 조합 배당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하되어 2026년부터 세수변화가 예상되므로

처음 5년 기간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세수효과 추계

- 개정안은 후계·청년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, 본 추계서는 50세 미만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
 - 현재 관련 법령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요건을 규정¹⁾
 -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나이 50세 미만 및 총 영농어 기간 10년 미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 -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 분야 종사자 또는 창업·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나이 40세 미만인 사람
 - 하지만, 정부가 제출한 관련 조합의 출자·예탁금 규모는 직업 및 연령에 한정하여 집계 가능함에 따라 본 추계서에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요건 중 직업 및 나이에 한정하여 50세 미만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
 - 나이 요건의 경우 후계농어업인 범위(50세 미만)가 청년농어업인 범위(40세 미만)를 포함
- 조합 출자 배당소득 및 예탁 이자소득은 동 출자·예탁금 납입 관련 금액,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나, 본 추계서에서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납입금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후계·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세율 인하

1) 조합 출자금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

-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709억원 등 2020~2024년 연평균 634억원(9.6%↑) 수준

1)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
[표 2]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 ¹⁾	2년 평균 ²⁾	5년 평균 ³⁾
조세감면액	492	491	611	868	709	789	634
(증감률)	(△37.2)	(△0.2)	(24.4)	(42.1)	(△18.3)		(9.6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
2) 2023~2024년 평균

3) 2020~2024년 평균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추계 방법

- 개정안에 따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세율 인하 관련 전체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한 후, 동 출자금 중 50세 미만 농어업 종사자의 납입금 비중을 적용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

- 현재 농어업 관련 조합 출자금 중 50세 미만 농어업인이 납입한 출자금 비중은 2024년 5.7% 등 최근(2023~2024년) 평균 5.9% 수준

[표 3] 농어업 관련 조합 전체 출자금 및 연령별 농어업인 납입금 규모: 2023~2024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3	2024	연평균
농협 및 수협 전체 출자금	152,699 (100.0%)	159,554 (100.0%)	156,127 (100.0%)
－ 50세 미만 농어업 종사자	9,289 (6.1%)	9,098 (5.7%)	9,193 (5.9%)
－ 40세 미만 농어업 종사자	2,000 (1.3%)	2,014 (1.3%)	2,007 (1.3%)
농협 전체 출자금	145,703 (95.4%)	152,350 (95.5%)	149,027 (95.5%)
－ 50세 미만 농업 종사자	8,635 (5.7%)	8,385 (5.3%)	8,510 (5.5%)
－ 40세 미만 농업 종사자	1,846 (1.2%)	1,841 (1.2%)	1,844 (1.2%)
수협 전체 출자금	6,996 (4.6%)	7,204 (4.5%)	7,100 (4.5%)
－ 50세 미만 어업 종사자	654 (0.4%)	713 (0.4%)	684 (0.4%)
－ 40세 미만 어업 종사자	153 (0.1%)	173 (0.1%)	163 (0.1%)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전체 조세지출 추계)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세율 인하 관련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동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- 현행 조합 출자금 비과세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

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(789억원)을 기준으로 함

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- 현재 조합 출자금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안의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개정안에 따른 세율 변동폭은 2026년 2%p, 2027년 이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
[표 4]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
현행(A)	5	9	9	9	9
개정안(B)	3	5	5	5	5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2	△4	△4	△4	△4

- 2023년~2024년 배당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789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56억원(789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-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[표 5] 조합 출자 배당소득세율 인하 관련 조세지출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조합출자 배당소득세 인하 관련 조세지출	113	225	225	225	225

- (후계·청년 농어업인 관련 조세지출 추계) 상기 추정한 농어업 관련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세율 인하 관련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, 동 출자금 중 50세 미만 농어업 종사자의 납입금 비중의 최근 평균(2023~2024년 5.9%)을 적용하여 추계

3) 추계 결과

- 후계·청년 농어업인의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7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60억원(연평균 12억원)으로 예상

[표 6] 후계·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조합출자 배당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후계·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세율 인하 (안 제88조의5)	-7	-13	-13	-13	-13	-60	-12

나. 후계·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율 인하

1) 조세지출 실적

- 조합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조 1,647억원 등 2020~2024년 연평균 5,725(27.8%↑) 수준

[표 7]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0~2024년
(단위: 억원, %)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 ¹⁾	2년 평균 ²⁾	5년 평균 ³⁾
조세감면액	4,372	3,269	3,113	6,226	11,647	8,937	5,725
(증감률)	(△13.9)	(△25.2)	(△4.8)	(100.0)	(87.1)		(27.8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
2) 2023~2024년 평균

3) 2020~2024년 평균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추계 방법

- 개정안에 따른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율 인하 관련 전체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한 후, 동 출자금 중 50세 미만 농어업 종사자의 납입금 비중을 적용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
 - 현재 농어업 관련 조합 예탁금 중 50세 미만 농어업인이 납입한 예탁금 비중은 2024년 0.7% 등 최근(2023~2024년) 평균 0.8% 수준

[표 8] 농어업 관련 조합 전체 예탁금 및 연령별 농어업인 납입금 규모: 2023~2024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3	2024	연평균
농협 및 수협 전체 예탁금	1,011,660 (100.0%)	1,039,979 (100.0%)	1,025,820 (100.0%)
－ 50세 미만 농어업 종사자	7,875 (0.8%)	7,550 (0.7%)	7,712 (0.8%)
－ 40세 미만 농어업 종사자	3,146 (0.3%)	3,007 (0.3%)	3,076 (0.3%)
농협 전체 예탁금	621,122 (61.4%)	631,100 (60.7%)	626,111 (61.0%)
－ 50세 미만 농업 종사자	5,502 (0.5%)	5,064 (0.5%)	5,283 (0.5%)
－ 40세 미만 농업 종사자	2,614 (0.3%)	2,440 (0.2%)	2,527 (0.2%)
수협 전체 예탁금	390,538 (38.6%)	408,879 (39.3%)	399,708 (39.0%)
－ 50세 미만 어업 종사자	2,373 (0.2%)	2,486 (0.2%)	2,430 (0.2%)
－ 40세 미만 어업 종사자	532 (0.1%)	567 (0.1%)	549 (0.1%)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전체 조세지출 추계)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율 인하 관련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동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- 현행 조합 예탁금 비과세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(8,937억원)을 기준으로 함
 - －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 - 현재 조합 예탁금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안의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－ 개정안에 따른 세율 변동폭은 2026년 2%p, 2027년 이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
[표 9]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
현행(A)	5	9	9	9	9
개정안(B)	3	5	5	5	5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2	△4	△4	△4	△4

- 2023년~2024년 배당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

8,937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638억원 (8,937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
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-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[표 10] 조합 예탁 이자소득세율 인하 관련 조세지출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조합출자 배당소득세 인하 관련 조세지출	1,277	2,553	2,553	2,553	2,553

- (후계·청년 농어업인 관련 조세지출 추계) 상기 추정한 농어업 관련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율 인하 관련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, 동 출자금 중 50세 미만 농어업 종사자의 납입금 비중의 최근 평균(2023~2024년 0.7%)을 적용하여 추계

3) 추계 결과

- 후계·청년 농어업인의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10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86억원(연평균 17억원)으로 예상

[표 11] 후계·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조합예탁 이자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후계·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세율 인하 (안 제89조의3)	-10	-19	-19	-19	-19	-86	-17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